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78호(2026. 9. 8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공업용 해수인수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사하구 구평동 402-32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인수관 80mm 1기, 200mm 1기
(2026. 10. 10. ~ 2028. 10. 9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: 에이치엘비에너지(주)(대표: 진양호)
 - 주 소: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91번길 80

2026. 9. 8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